

의안번호	제401호
의결연월일	2021.10.18.

- 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
전부개정조례안 -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1. 10. 08. 예산군수
- 회 부 일 자 : 2021. 10. 08.
- 상 정 일 자 : 2021. 10. 18.

제274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(안전관리과장 : 박주완)

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 제21조 개정에 따른 위험도 평가 법령 정비 체계의 일환으로 조례를 정비하여 체계적인 평가단을 구성·운영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- 위험도 평가단 기능, 구성 등에 관한 사항(안 제2조~제3조)
- 평가단원의 관리, 교육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5조)

- 위험도 평가단의 활동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평가 단원의 안전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제9조)
-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: 이완호)

- 본 조례는 상위법인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 제21조 개정에 따른 위험도 평가 법령 정비 체계의 일환으로 조례를 정비하여 체계적인 평가단을 구성·운영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,
-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을 따르고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·답변 요지

- 생략

5. 토론 요지

- 없음

6. 심사 결과

-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